

#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정관

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### 제18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(이하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이 될 수 없다.
 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2. 미성년자
 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